

취득세신고 및 납부안내

1.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잔금납부일 또는 사용검사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완납세대	사용검사일(23년 12월 예정) 이전	사용검사일 기준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사용검사일(23년 12월 예정) 이후	잔금납부일 기준 60일 이내
(단,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등기 전까지는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고납부방법 : 아산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 자진신고 후 고지서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

3. 신고구비서류

-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 ③ 유상옵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④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⑤ 분양대금납부내역서 사본 1부
- ⑥ 도장
- ⑦ 권리의무승계세대
 - 분양권전매 경우 : 분양권전매계약서 사본 1부
전매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 증여 : 검인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4. 취득세율

과세표준액	주택수	취득세	교육세	합 계
(분양가액+유상옵션+발코니확장+프리미엄)-부가세	2주택까지	1%	0.1%	1.1%
	3주택	8%	0.4%	8.4%
	4주택이상	12%	0.4%	12.4%

※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시면 취득세신고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智眼.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06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현우빌딩)

대표전화. 02-501-9488 / 팩스. 02-501-9489 / E-MAIL brjian@jianlaw.co.kr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팀 전용휴대폰. 010-8314-5413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입금계좌 : 기업은행 / 구숙경(지안법무사) 131-122303-04-016